

의안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직할시장
2. 건 명 :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4. 12.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진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4. 12.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4. 12. 10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 12. 14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 체전을 계기로 확충된 체육시설을 추가 삽입하고, '88. 12 이후 수년간 조정되지 않은 사용료를 타시·도 및 민간시설과 균형을 이루도록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현실에 불합리하고 미흡한 일부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일부시설의 명칭, 위치의 삽입과 관리자 지정(안별표1)
 - 명칭변경 : 사정공원내 체육시설
 - 사정 잔디구장 → 사정 축구장
 - 사정로라스케이트장 → 사정로울리스케이트장
 - 배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 → 사정간이구장
 - 신설경기장 위치 및 명칭삽입
 - :다목적체육관, 월평사이클장, 월평공도장, 월평양궁장, 복용승마장

- 관리자 지정 : 시설별 관리자 지정
 - ┌ 사정공원내 체육시설 - 공원관리사무소장
 - └ 기타 체육시설(공설운동장, 복용승마장, 월평사이클장등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의 정의개정 (안 제2조,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 단체입장 : 10인 이상 ⇒ 30인 이상 (안 제2조 7호)
 - 어 린 이 : 국민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 (안 제2조 9호)
 - 청 소 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안 제2조 10호)
 - 어 른 : 19세 이상의 자
⇒ 20세 이상인 자 (안 제2조 12호)
- 위탁시설의 사용료를 협약에 의하도록 한 현행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조례의 별표에 의거 징수토록 개정 (안 제10조)
-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 사용료와 수입 총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20%를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의 행사는 25% 징수(안 제11조 제2항)
 - 현행은 수입총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20%를 징수-
- 현행 조례 적용기한이 '91. 12. 31 자로 만료된 프로야구 경기 관련 50% 감면 조항 삭제 (안 제12조 제3항)
- 현행규칙에 규정된 사용료 감면대상을 조례로 규정 (안 제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면제)
 -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50%이내)
 - 아시아경기대회 또는 올림픽경기 (50%이내)

-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단일 경기 (50%이내)
-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 (50%이내)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50%이내)

○ 체육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조정 (안 별표2, 별표3, 별표6)

- 전문 체육시설 사용료를 타시도 수준으로 조정
 -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사이클장 -
- 수영장, 사정로올러스케이트장 사용료를 관내 민간체육시설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수영장 58%, 사정로올러스케이트장 45% 수준)
- 실제 적용이 불합리한 사용료 항목 삭제
 - 사정축구장, 사정간이구장의 “체육이외의 사용” 항목 및 “이용료(1회 이용)”항목 삭제 -

3. 검토 의견

본 안건은 금년도 전국체전에 따라 신설된 경기장시설을 체육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난 '88년이후 수년간 조정되지 않은 현 체육시설 사용료를 타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다목적 체육관과 월평 사이클 경기장, 궁도장, 양궁장 그리고 복용동 승마장을 체육시설에 추가 삽입하고 시설별 관리자를 지정하는 한편 일부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안 별표 1)

둘째, 체육시설 사용의 단체입장 기준을 1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하였고, 3단계로 구분한 어린이, 청소년, 어른의 연령 기준을 재조정하였음.

셋째, 그동안 규칙에 규정되었던 사용료 감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였음. (안 제12조)

넷째, 체육시설의 사용료, 이용료를 타시도 및 민간 체육시설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하였음. (안 별표 2, 3, 6)

사 용 료 비 교 표

1. 기본 전용 사용료 (평일, 주간 기준)

경기장별	기준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현 행	조 정	인상을	현 행	조 정	인상을
주경기장	트랙 1회	20,000	30,000	50%	80,000	100,000	25%
	필드 "	40,000	60,000	50%	100,000	150,000	50%
충무체육관	"	30,000	40,000	33%	90,000	200,000	122%
야구장	"	20,000	30,000	50%	50,000	100,000	100%
정구장	코트당	10,000	15,000	50%	15,000	20,000	33%
로라스케이트장	1회	30,000	40,000	33%	-	-	
간이빙상장	1시간당	50,000	60,000	20%	-	-	

※ 신규 시설 제외

2. 이 용 료

경기장별	기준	개 인			단 체			월 회 원		
		현행	조정	인상율	현행	조정	인상율	현행	조정	인상율
주경기장	트랙 1회	200	300	50%	100	150	50%			
	필드(2시간당)	400	1,000	150%	300	700	133%			
충무체육관	"	500	1,000	100%	350	700	100%			
수영장	어른	1,200	2,000	67%	800	1,500	88%	24,000	40,000	67%
	청소년	800	1,400	75%	600	1,100	83%	18,000	30,000	67%
	어린이	600	1,100	83%	400	800	100%	15,000	20,000	33%
야구장	1회(2시간당)	1,000	1,500	50%	5,000	10,000	100%			
정구장	코트당	2,000	4,000	100%	-	-				
로울러 스케이트장	어른	500	800	60%	-	500	신규			
	청소년	300	500	67%	-	300	신규			
	어린이	100	200	100%	-	100	신규			
간이빙상장	어른	2,000	2,500	25%	1,800	2,000	11%			
	청소년	1,800	2,000	11%	1,600	1,800	13%			
	어린이	1,300	1,500	15%	1,100	1,200	9%			

※ 신규 시설 제외

금번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의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인상이라고 보겠음.

대전시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지난 '88년 12월이후 현재까지(6년) 단 한번도 인상 조정되지 않은 것인데, 그동안의 물가상승율과 타시도 및 민간시설 사용료와의 균형 유지 측면에서 인상 조정하는 것이라 하겠음.

다만, 조정된 사용료는 결과적으로 타시도 요금체계와 동일하다고 보겠으나, 자료의 인상을 분석과 같이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가 대부분 50% 이상 100%까지 인상되어 일시에 너무 큰 폭으로 조정 되었다고 봄.

따라서 본 인상문제는 앞으로 관련 체육단체나 사용자의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겠고, 또한

대전시의 요금 인상안이 일반 민간 체육시설등의 요금에 영향을 준다고 볼 때는 인상안 결정전에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지침에 의거

최소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자문은 받았어야 되지 않으나 봄.